



강 남 구



수신 내부결재
(경유)

제목 등록세(부동산) 부과취소(경정)결정서

2014. 2월 수시분으로 과세된 등록세(부동산)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58조 【부과취소 및 변경】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부과취소하고자 합니다.

가. 부과 내역

○ 납세의무자 : *****

○ 과세 사유 : *****

○ 부과세액 : 등록세 등 총 114,406,650원

나. 부과취소 내역 : 2014/2월 수시분 *****

○ 부과취소 사유 : *****

○ 부과취소 세액

세 목	당 초	취소(경정)	차 액	비 고
등 록 세	96,261,080	40,929,080	55,332,000	
(가산금)	7,508,350	3,192,470	4,315,880	
지방교육세	18,145,570	7,079,170	11,066,400	
(가산금)	1,415,320	552,170	863,150	
합 계	123,330,320	51,752,890	71,577,430	

- 붙임 1. 결의결정서 1부.
 2. 부과취소내역서 1부.
 3. 판결문***** 1부. 끝.

주무관

김혜정

재산1팀장

이규화

세무1과장

代**이규화**

기획경제국장

전결 01/04
김용운

협조자

시행 세무1과-225 () 접수 ()

우 06090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426 / www.gangnam.go.kr

전화 02-3423-5645 / 전송 02-3423-8833 / walden0708@gangnam.go.kr / 부분공개(6)